



#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

## 지원대상

- ▶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300인 미만 우선지원)
- ▶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(고용노동부 승인)

## 지원제외 대상

- ▶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
- ▶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
- ▶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후 지급 사업장은 융자 신청·접수 불가

## 지원금액 / 지원조건

**지원금액** 사업장 당 **10억원** 한도(기 지원 융자금 상한 시 추가 지원)

**지원조건** 연리 **1.5%**(고정금리)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
## 지원설비

###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

**주요 설비명** CNC 머시닝센터, 프레스, 크레인, 사출성형기, 산업용 로봇, 전단기, 압력용기, 리프트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, 원심기, 롤러기, 컨베이어, 고소작업대, 절곡기, 지게차(3톤 미만 전동) 등  
 ※ 지게차 3톤 미만(전동식)으로 후방충돌방지 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

###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

**주요 설비명** 원심기, 공기압축기(스크루 형태 포함), 금속절단기, 포장기계(진공포장, 래핑기) 등

###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

**주요 설비명** “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”에 작업자 노출 방지위한 대체·자동화설비, “근골격계부담 작업” 개선 위한 대체·자동화설비

###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·기구 및 설비

**주요 설비명** 연삭기, 연마기,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, 식품가공기계, 자동차정비용 리프트, 인쇄기, 공작기계 (선반, 드릴기, 평삭, 형삭기, 밀링),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(둥근톱, 대패, 루타기, 락톱, 모떼기)

###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

**주요 설비명** 과부하방지장치, 파열판,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

※ 그 외 지원설비 해당 여부의 경우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

## 추진절차

